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12. 2(월)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3. 11. 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3. 11. .

라. 상정일자 : 2013. 12. 2.(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건설교통위원회)

- 제안설명 : 건설교통국장 강 상 석
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차량 부제 운행방식이 “승용차 요일제”로 단일화 됨에 따라 각 부제 별로 차등 적용하던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단일화하고
-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0부제, 5부제, 2부제 등 세분화 되어 있는 차량 부제 운행방식을 “승용차 요일제”로 단일화 됨에 따라 주차요금징수 방법 및 감면비율을 50%로 단일화 함.(안 제4조의2제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『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조례』 제4조에 의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공용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50%로 상향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유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의 무단방치에 대한 대책은?(김병철 의원)
⇒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.
- 세외수입 감소의 규모는?(전용철 의원)
⇒ 감소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.

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이도형, 이재병, 김병철, 정수영, 이재호, 전원기, 전용철 의원
- 원안에 동의함.
- 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제석위원 7, 찬성 : 7명)

7. 기타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 다만,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민간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제4조의2제3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(자동차 외부에 부제 참여차량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)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10부제인 경우 : 20퍼센트 감면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5부제·요일제인 경우 : 30퍼센트 감면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2부제인 경우 : 40퍼센트 감면</u></p>	<p>제4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「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 다만,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